



일본 재무성, 4년 만에 지진보험제도 전면 개정

이상우 선임연구원

- 일본 재무성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진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진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보험금 지급 보상기준인 전손, 반손 등 3가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며, 이를 위해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임.
 - 금번 지진보험제도 전면 개정은 재무성이 2007년 보험료 산출방법을 변경한 이후 4년만임.
- 일본 지진보험은 「지진보험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 인수된 지진보험은 정부가 재보험 방식으로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의 임의 가입의 정책성보험임.
 - 그러나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보상과정에서 피해금액에 비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는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일본 재무성과 손해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을 통해 최종 기본안을 확정함.
- 개정안에는 현행 화재보험의 50% 이내 지진보험금 설정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내진 설계 수준에 따라 보험요율을 세분화함.
 - 또한, 동일본 대지진 시 전체 손해 중 70%가 일부손해(보험금액의 5% 보상)로 보상이 지급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손(동 50% 보상)과 일부손해 구간 사이에 20~30% 보상구간을 추가하고, 건축구조나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제도를 더욱 세분하여 할인을 확대할 방침임.
 - 이와 함께 향후 대지진의 위험이 높은 동경지역 주변의 관동지방과 쓰나미 발생가능성이 높은 동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방침임.

(산케이신문, 47News 10/20, 니혼게이자이신문 10/18 뉴스 종합)